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소관과로 함(안 제4조)
- 나. 주민생활국에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다.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지적과 및 녹지환경과를 둠(안 제7조)
- 도시관리국 사무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함
  -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사무로 변경함

### 참고사항

- 현행 :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0과·20동·1추진반(한시기구)
- 개편 :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1과·16동·1추진반(한시기구)

※ 부서 신설(도시디자인과)

###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2007.5.17 법률 제8435호)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5호)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8. 1. 3 ~ 1. 9)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1.10)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 제10조, 제21조의4"를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다만,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하고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를 "다만,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2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건축과·지적과"를 "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로 하며, 동조제2항에 제20의2호 및 제20의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0의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의3.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중 제20호를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분청의 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내지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b>제6조의2, 제10조, 제21조의4</b>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4조(행정관리국)</b>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홍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여권과 및 신청사 추진반을 둔다. <u>다만, 자치행정과는 여유키구로 하고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생략)</p> <p><b>제6조(주민생활국)</b> ①(생략) ②주민생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22.(생략) <u>&lt;신 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23.~32.(생략)</p> <p><b>제7조(도시관리국)</b>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건축과·지적과</u> 및 녹지환경과를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b>제1조(목적)</b> ----- ----- ----- -----<b>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b>----- ----- -----</p> <p><b>제4조(행정관리국)</b> ①----- ----- ----- <u>다만,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현행과 같음)</p> <p><b>제6조(주민생활국)</b> ①(현행과 같음) ②----- ----- 1.~22.(현행과 같음) <u>22의2.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u> 23.~32.(현행과 같음)</p> <p><b>제7조(도시관리국)</b>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u> 및 녹지환경과를 둔다. ②----- -----</p>

현행	개정안
<p>1.~20.(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생략)  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9.(생략)  20. <u>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u>  21.~36.(생략)</p>	<p>1.~20.(현행과 같음)  20의2. <u>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20의3. <u>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현행과 같음)  ②-----  -----  1.~19.(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21.~36.(현행과 같음)</p>